

8백만원임

○ 주요지출내역은

- 노인교실 운영 : 1억 3천 2백만원
- 거동불편노인 밀반찬 배달사업 : 1억 5천 1백만원
- 기금심의 운영비 : 1억 8천 만원
- 노인회 사업비 지원 : 3억 6천 만원 등

총 6억 4천 4백만원으로 지출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,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외 받고 있는 노인들을 확대지원 할 사업의 다각적인 발굴을 통하여 기금 설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

○ 사회복지기금중 장애인복지계정은 전년도 대비 21억 3천 2백만원(21.8%) 증가한 119억 5백만원으로

○ 주요 지출내역은

- 장애인 지원사업비 : 6억원
- 기금관리 운영비 : 5백만원

총 6억 5백만원으로 이는 타 기금관리의 지원사업에 비하여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, 향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개발 추진함으로써 선진복지 행정 구현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개선 대책이 요구됨

○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1.6% 9억 4천 1백만원 감소한 588억 3천 2백만원이며,

○ 주요 지출내역은

- 용자금 : 62억 8천 만원
-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: 3억 2천 1백만원
- 위해식품 시민신고 보상금 : 7억 3천 만원
- 인쇄물 발간 : 6억 8천 4백만원
-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: 4억 1천 4백만원
- 자치구 보조금 : 75억 원
- 자치구 과징금 교부액 : 35억 9천 3백만원
- 체납과징금 징수 포상금 : 6백만원
- 재정투융자기금 지원 85억 원 등

지출 총액은 272억 2천 9백만원으로 기금 설립목적에 위한 적절한 사업추진내역이라고 이해되나 자치구 과징금 교부사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의 식품위생진흥기금의 시·구간 귀속 비율(40:60)에 따라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이나 기금관리 조례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전산시스템의 조기 개발 등으로 사전에 자치구별로 배분되도록 보완이 필요하거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지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

○ 기초생활보장기금은 '99년도 설치된 기금으로써 총 조성액이 57억 8천 5백만원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지원사업을 발굴,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을 통한 선진복지 구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됨.

서울여성플라자부지및시설의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의견

- 서울여성플라자부지및시설의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문화·정보교류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할 「서울여성플라자」 건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「재단법인 서울여성」에 서울여성플라자 시설(부지 및 시설)을 무상 대부하려는 것임.
- 무상 대부하려는 서울여성플라자 시설은 여성정책관이 재산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. 행정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려면 지방재정법 제82조(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), 동법 제83조(감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)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(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), 동법시행령 제88조(감중재산의 대부)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따라서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서울여성플라자 시설을 서울시가 출연한 「재단법인 서울여성」에 무상 대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
-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므로 향후 재단법인의 독립 재산이 가능할 경우 유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.

그리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(사용수익허가기간)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된바 본 동의안의 경우에도 3년의 범위 안에서 서 기간을 명시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
---

서울여성플라자부지및시설의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

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, 그리고 문화·정보교류 등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할 「서울여성플라자」를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전액 출연하는 설립한 「재단법인 서울여성」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여성플라자 부지 및 시설의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한다.

<첨부>

「서울여성플라자」 건립·운영 현황

-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, 사회참여 및 문화·정보교류 등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할 「서울여성플라자」를 2002.6월 준공하였으며
- 이 시설의 운영주체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『재단법인 서울여성』을 2002.1월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

시설현황

- 위 치 : 동작구 대방동 345번지 소재
- 규 모 : 대지 1,966평, 건축연면적 6,758평 (지하3층/지상5층)
- 건립기간 : '99. 11. ~ 2002. 6. ※ 2002. 6. 4(화) 준공식 개최
- 총건설비 : 333억원
- 주요시설 : 여성사 전시관, 여성NGO센터, 여성자원활동센터 여성정보교육원, 강의실, 어학실, 회의·세미나실 종합상담실, 국제회의장, 아트홀, 연수시설, 수영장 등

추진경과